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19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2-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략담당관)	9
202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24
2022-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33
2022-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42
2022-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인구교육과)	51
202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0
2022-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69
2022-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기업과)	78
202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85
202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94
2022-	거창군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안전총괄과)	102
2022-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안전총괄과)	112
2022-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23
2022-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129
2022-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	139
2022-	거창군 농어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축산과)	148
2022-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농촌과)	157
2022-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행복농촌과)	167

의 안 번 호	제14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4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이유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위원 명칭변경(안 제9조)

1) 건설과장 ⇒ 건설교통과장

나. 법령입안원칙에 맞게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 정비(안 제15조~제17조)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전문분야별 등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다. 이미 실효된 규정 정비(안 제18조, 조례 제2634호 부칙 제3조)

1) 거창읍 지역회의에 관한 특별규정 삭제

2) 유효기간(2021. 12. 31.까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8.~3.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을 “성별”로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운영”을 “운영,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한다.

조례 제2634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라 새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u>성별</u> (<u>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u>),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u>건설과장</u>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④ (생략)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보건사업소분과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사업소 소관업무 2. 행정복지분과위원회: 행정복지국 소관업무 3.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4. 농업분과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u>성별</u>,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u>건설교통과장</u>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의 직제순 상위 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및 개선방안,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각 분과위원장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창읍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

<삭 제>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역회의는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제안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

2.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삭 제>

원으로 구성한다. ④ 거창읍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1. 주민예산학교 수료자 2. 예산 및 재정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거창읍 지역회의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회의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창읍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조례 제2634호 시행 2021. 4. 28.)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유효기간)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제> <삭제> <삭제> 부칙(조례 제2634호 시행 2021. 4. 28.)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삭제>
--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

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2년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 2) 위원회의 구성 나) 위원회의 구성 규정 P222
~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 3) 위원회의 운영 라)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P232
~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 안 번 호	제15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전략담당관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15
----------	---------

제출연월일	2023. 3. 20.
제 출 자	전략담당관

1. 제안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비로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등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나. 공공기관등의 유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3조~제10조)
- 다.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함(안 제11조)
- 라.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12조)
- 마. 이주직원 이주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 바. 이전공공기관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14조)
- 사. 유치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20.~3.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및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거창군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이나 교육연수·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대학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등”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등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기관등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전략 및 지원계획의 수립
2.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등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 외의 다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군수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유치활동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의 지원
2.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건축비
3. 임대료(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 임대료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이전 비용
-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5.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치기여자 포상금) 군수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유치활동 지원(안 제11조)
- 나.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다.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라.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마. 유치기여자 포상금(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이전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에 따른 지원 비용추계는
어려운 상황임

작성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3.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1의3. (생략)

2.~9. (생략)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생략)

12.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707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5. 2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3.~5. (생략)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의 안 번 호	제16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16
----------	---------

제출연월일	2023. 3. 21.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과에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정책지원관) 반영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함(안 제25조)

- 1) 정원 총수: 증 3명(793명 ⇒ 796명)
- 2) 의회사무기구 정원: 증 3명(17명 ⇒ 20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 3명

가) 현행: 793명(본청360, 의회17, 직속기관149, 사업소41, 읍42, 면184)

나) 변경: 796명(본청360, 의회20, 직속기관149, 사업소41, 읍42, 면18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4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15.~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793명”을 “7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명”을 “20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고 한다)의 총수는 <u>793명</u> 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u>17명</u>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고 한다)의 총수는 <u>796명</u> 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76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u>20명</u>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6 793	360	20 17	149	76	73	41	42	184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9 756	354	20 17	119	46	73	40	42	184
	4급	5	4		1		1			
	5급	39	15	3	6	4	2	3	1	11
	6급 이하	715 712	335	17 14	112	42	70	37	41	173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3		3	3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증원 3명

나. 관련조문: 정원 총수(안 제2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군 비	140	140	140	140	140	700

3. 관련 의견: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으로 현안업무 추진과 행정업무 효율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3년 인건비: 140백만원

가. 정원 3명 증원 * 47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권 해 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의 안 번 호	제20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20
----------	---------

제출연월일	2023. 3. 21.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시행 2023. 3. 2.)으로 물가수준에 맞추어 숙박비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여행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삭제함(안 제4조, 별표 2)

1) 조례로 달리 정하지 않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2) 근거: 제6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

나. 인용 법령 정비(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46조

2)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1.~3. 13.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8호 중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를 “해당 공무원란 중”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u>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7. (생 략) 8. 영 별표 1 각 호의 <u>해당공무원란</u>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u><삭 제></u>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7. (현행과 같음) 8. 영 별표 1 각 호의 <u>해당 공무원란</u>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표 2의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6호, 2021. 5.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
분화되어 있는 계급별 여비 지급 구분 일부를 정비하고,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 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 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현행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

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의 안 번 호	제21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21
----------	---------

제출연월일	2023. 3. 21.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장의 업무에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문장 정비

- 1) 실비변상 ⇒ 실비 보상(안 제명·제1조·제4조)
- 2) 어법과 어순에 맞게 문장 정비(안 제5조·제6조)

나. 현행화에 따른 신설(안 제2조·제4조)

- 1) 업무: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 2) 실비 보상: 회의참석수당

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신요금 지원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1,36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24.~3.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실비변상”을 “실비 보상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

제4조 조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여금”을 “상여금·회의참석수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장”을 “군수는 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체육·수련대회(군단위)”를 “군단위 체육·수련대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신요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u>실비변상</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생략)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 (생략) <u><신 설></u>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4조(<u>실비변상</u>) ① (생략)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상여금</u>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u>편의제공</u>)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u>사기진작</u>) <u>이장</u>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생략) 5. <u>체육·수련대회(군단위)</u>: 연 1회 <u><신 설></u>	<u>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u>실비 보상</u>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 (현행과 같음) 5. <u>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u>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4조(<u>실비 보상</u>)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상여금·회의참석수당</u>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u>편의제공</u>)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u>사기진작</u>) <u>군수</u>는 <u>이장</u>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u>군단위 체육·수련대회</u>: 연 1회 6. <u>통신요금</u>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이장의 업무수행 시 필요한 이장 통신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6조(사기진작)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21,360	64,080	64,080	64,080	64,080	277,68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통신요금 지원

- (1차 연도) 이장 267명 X 20,000원 X 4개월 = 21,360,000원

- (2차~5차) 이장 267명 X 20,000원 X 12개월 = 64,080,000원

작성자 행정과장 권해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장은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9. 3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연 50,000원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통신비 지원관련 의견22-0140)

1. 질의요지

- 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 나. 질의 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2.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만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만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장에게 통신요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인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러한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 안 번 호	제22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3-22
----------	---------

제출일자	2023. 3. 20.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활동을 정함(안 제3조)

- 1) 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 2) 활동: 교육·문화·체육 활동,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등

나.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정함(안 제4조)

다. 바우처의 사용지역을 정함(안 제5조)

라. 가맹점의 등록을 정함(안 제6조)

- 1) 등록 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2) 등록된 가맹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마. 점검, 이월 및 사용기한, 대금의 지급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바. 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청소년기본법」 제4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청소년기본법」 제49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추경예산 592,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 30.~2.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활동) ① 거창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문화·체육 활동
 2.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3. 이미용 등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년,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군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인지를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점검)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나. 관련 조문: 지원 대상 및 활동(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군비	592,000	558,100	528,800	510,400	493,600

3. 관련 의견

관내 청소년들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역량강화 및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지원대상: 13세~18세 청소년

나. 사업비: 592,000천원 정도

1) 13세~15세 바우처: 180,000천원(100천원x1,800명)

2) 16세~18세 바우처: 380,000천원(200천원x1,900명)

3) 운영비: 32,000천원(시스템 22,000+ 홍보 등 10,000)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제24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무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24
----------	---------

제출연월일	2023. 3. 21.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하고,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재산을 신설하는 등 공공기관의 군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신설함(안 제30조)

-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 3) 근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나. 조성원가로 매각 할수 있는 재산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공유재산을 추가함(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2.~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3조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공유재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⑥ (생 략) <u><신 설></u>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⑥ (현행과 같음) ⑦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u>국가산업단지</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u><신 설></u>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u>산업단지</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5.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취득한 공유재산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

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6. 9.>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삭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53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u>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u> 를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u>산업단지지정권자</u> 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u>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외국인</u> 을 위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 1항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u>국가산업단지</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u>외국인에게</u>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생략)	<u>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제 1항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u>산업단지</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u>외국인에게 매각하거나</u>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의 안 번 호	제31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경제기업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1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경제기업과장

1. 제안이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전 조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5,992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23.~3. 1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하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기채”를 “기채(起債)”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제9조를 제7조로 하며 제7조(종전 제9조) 조 제목 “(관리·운용)”을 “(준용)”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u>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u>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②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거창군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u>기채</u>자금 4. 보조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u>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u>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와 세입 등) 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 2. 사업 선수금 3. <u>기채(起債)</u>자금 4. 보조금 5. 일반회계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 ② 회계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u>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u> 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3. 일반회계 전출금 제8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9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u>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u> 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3. 일반회계 전출금 제6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지방자치법」 제29조를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사항으로 삭제(법제처 권고)
---	--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관련 조문: 제3조(설치와 세입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4,000,000	10,000,000	26,700,000	-	-	40,70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거창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 토지보상 등: 100억원

2) 조성사업비: 367억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질의제목: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 의견17-0201 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2002(2017.7.20.)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

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의 안 번 호	제32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경제기업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2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경제기업과장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3. 5. 16.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삭제(안 제3조)

1) 법률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에 해당

2)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3.~3. 15.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입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조 제목 “(관리·운용)”을 “(준용)”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설치와 세입)</u> 거창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u>제3조(존속기한)</u>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u>제5조(관리·운용)</u>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u>제6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2조(세입)</u>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삭 제> <u>제5조(준용)</u>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세출(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지원대상: 발전소주변지역인 남상면, 신원면

나. 사업비: 30,000천원

1) 남상면 주민숙원사업비: 15,000천원

2) 신원면 주민숙원사업비: 15,000천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5. 16. 시행]

◇ 개정이유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연장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23. 5. 16.)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제25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25
----------	---------

제출연월일	2023. 3. 21.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제안이유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우리지역 군민에게 널리 영향을 미치는 지역 문화시설의 지원근거를 정비하여 군민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법령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안 제1조·제2조, 제6조)

- 1) 목적: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이므로 인용법령 삭제
- 2) 정의: 법령의 정의와 같은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 등의 표현 방식에 맞게 정비

나.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정비(안 별표)

- 1) 신설: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 2) 삭제: 군민을 위한 영화관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9조
-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8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280,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3.~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진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6조제4항 중 “지역예술인”을 “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중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 군민을 위한 영화관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u>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u> 2.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를 위한 <u>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u> 3. “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u>
<u>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생략)</u>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u>지역예술인</u>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u>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현행과 같음)</u>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u>지역예술인(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나. 관련조문: 지역문화 지원사업(안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합계	400,000
도비	120,000
군비	28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1. 2023년 일시 지원사업

2. 아시아1인극협회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400,000천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 호 경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시행일: 2023. 3. 28.] 제2조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 2. 3.]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

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관광사업 지원기준(제4조 관련)

사업분야	세부사업
1. 관광객 유치	가. 국내외·단체 관광객 유치설명회·팸투어 나.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다. 관광택시 운영 라.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마. 지역 문화유적·관광지의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개발·판매	가. 관광상품 또는 관광자원 기획·발굴·판매 나. 관광기념품·관광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참가 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음의 사업 1)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2)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3. 관광상품·관광 홍보	가. 관광홍보 마케팅 나. 관광시설의 홍보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품권 또는 물품 지원 1) 스탬프 투어자 2) 팸투어 참여자 3)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의 소셜미디어 홍보 참여자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 관광복지 증진	가. 제4조의2 각 호의 사업 나. 그 밖에 관광복지 증진 사업

의 안 번 호	제33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3
----------	---------

제출연월일	2023. 3. 21.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세입·세출 등 특별회계 규정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전 조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989,169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14.~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의료급여사업 효율적 수행

나. 관련 조문: 세출(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계	989,169	1,004,436	1,019,703	1,034,970	1,050,237	5,098,515
국비	120,254	120,254	120,254	120,254	120,254	601,270
도비	30,064	30,064	30,064	30,064	30,064	150,320
군비	838,851	854,118	869,385	884,652	899,919	4,346,925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집행 도모

나. 의료급여의 현금급여지원: 135,125천원

1)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다. 의료급여 행정경비 지원: 15,193천원

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및 반환금: 838,851천원

1)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의료급여비 전체의 4퍼센트) 예탁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정순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 12. 31.>

의 안 번 호	제26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26
----------	---------

제출연월일	2023. 3. 21.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안전보안관 기능·위촉·임기·교육, 관리 및 해촉,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3조~제8조)

다.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2백만원 확보(활동비 실비보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22.~3. 14.
 - 나) 예고결과: 의견 있음(미반영 2건)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3조)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김은애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 안전 관련교육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 요청	안전보안관 운영 취지는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안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에 있음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 “안전관련교육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하는 것은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의견으로 미반영함	미반영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생활, 교통안전교육 실시” 추가 요청	안전보안관의 활동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미반영함 ※ 「재난안전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미반영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거창군 안전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수준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거창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4조(위촉)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40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중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안전교육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성인지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안관 대표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대표단의 운영 등) ① 대표는 대표단을 대표하고 대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단의 회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단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생략)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12. (생략)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

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레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제27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3-27
----------	---------

제출연월일	2023. 3. 21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이유

최근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을 정함(안 제7조)

1) 대상: 공동주택·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 범위: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라. 사후관리, 중복지원 제한, 업무의 위탁, 홍보,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정함(안 제8조~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4,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2.~3. 2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건설탕: 전부반영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 및 재원 조달방법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침수방지시설을 결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설치
2.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공동주택: 19,200천원

= 3개소×8,000천원×80퍼센트

2.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4,800천원

= 3개소×2,000천원×80퍼센트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레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다. (생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 10.~17. (생략)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가. 삭제 <2017. 10. 24.>
 -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 가. 설해 예방대책
 -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설물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지하 공간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③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3. 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제34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환경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4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환경과장

1. 제안이유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9,285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7.~3. 20.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조 제목 “(예산 편성·결산·운용)”을 “(준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4조(<u>예산 편성·결산·운용</u>)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u>준용</u>)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나. 관련 조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계	9,285,431	9,378,285	9,472,068	9,566,788	9,662,456	47,365,028
기금	9,263,431	9,356,065	9,449,626	9,544,122	9,639,563	47,252,807
군비	22,000	22,220	22,442	22,666	22,893	112,221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주민지원사업 추진: 988,154천원

2.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6,433,000천원

나. 환경기초시설 운영: 1,706,969천원

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115,677천원

3. 일반회계 전출금

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6,631천원

4. 낙동강수계기금 정산잔액 반환금: 15,000천원

작성자 환경과장 곽칠식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29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7.>

1. 국가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제11호·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의 안 번 호	제35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 출 자	건설교통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5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건설교통과장

1. 제안이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상위법명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2조)

- 1)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 변경: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1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712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3.~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조 제목 “(설치)”를 “(설치 및 세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로 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5조 중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를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창군수가”로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 제7조) 조 제목 “(관리·운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를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45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는 「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설치 및 세입) 거창군수는 「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이하 “ 영 ”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 <u>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영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u>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u>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u>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창군수가</u>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7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 밖의 부대경비

나. 관련 조문: 세출(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711,590	711,590	711,590	711,590	711,590	3,557,950

3. 관련 의견: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역 균형 발전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3년 기준)

가. 합천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711,590천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 「지방회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17-0201

질의제목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2002(2017.7.20.)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

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의 안 번 호	제36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건설교통과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6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건설교통과장

1. 제안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요금 등 수입금의 관리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나. 세출 삭제함(안 제4조)

- 1) 근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
- 2) 내용: 전국적 통일을 위해 특별회계 용도 신설

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전 조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47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27.~3.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입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중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를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관리·운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이”를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생략)</u> <u>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제2조(설치와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u> <u>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u>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u>	<u><삭 제></u>
<u>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법 제7조제1항·제3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폐지</u> <u>2. 법 제8조, 법 제13조에 따른 노상·노외 주차장의 관리</u> <u>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외,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u> <u>4.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운영비,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과태료 중 특별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에 한정함</u> <u>5.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주차관련 사업</u>	<u><삭 제></u>
<u>제5조(세입징수)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를 수납</u>	<u>제5조(세입 징수)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을 특</u>

<u>하고자 할때는 미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u>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u>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u>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7조(관리·운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u>별회계의 세입으로 징수하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납입통지서를 납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u> <u>② 군수는 납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입을 납부한 경우 별지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u>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u>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u>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등
- 나. 관련 조문: 「주차장법」 제21조2제4항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479,625	494,015	508,836	524,101	539,824	2,546,401

3. 관련 의견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과태료 등의 관리와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거창군 노상주차장 현행화 용역: 22,000천원
- 2.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 92,000천원
 - 가.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나.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15개소)
 - 다. 공한지 소규모 무료주차장 조성
- 3. 주차시설 및 주정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4,337천원
- 4. 선진교통문화조성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181,288천원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 2022.6.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 2021. 1. 12.>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 12.>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별시장 등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거나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에 광역시의 보조금을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1조의2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의 안 번 호	제37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7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농업축산과장

1. 제안이유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거창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1)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 변경: 2028년 12월 31일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례에 따라 정비(안 제2조·제3조·제5조의2·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1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75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2. 28.~3. 20.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2조의3”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창군”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으로 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① <u>거창군</u>(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u><신 설></u>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u>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u>농업협동조합법</u>」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①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u>2028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제5조의2(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u><삭 제></u> 「지방자치법」 제29조 재기재로 삭제(법제처 정비권고)

거창군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업발전자금 융자 지원

나. 관련 조문: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750,628	3,750,628	3,750,628	3,750,628	3,750,628	18,753,14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농업발전자금 융자 지원: 3,000,000천원
2.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50,000천원
3. 운영비: 6,000천원(사무관리비, 국내여비)
4. 적립금 및 예비비: 694,628천원

작성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

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5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6. 9.]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17-0201

질의제목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2002(2017.7.20.)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

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의 안 번 호	제29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29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귀농세대 지원 나이를 확대하여 노후를 거창에서 귀농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적극 유인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1) 귀농인: 법령을 인용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함

2) 귀농세대

가) 현행: 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

나) 변경: 20세 이상 65세 이하

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등록대상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가 귀농인 확인 서류로 부적합하여 삭제

나. 법령 재기재사항 등 정비(안 제19조, 제1장~제4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3. 3.~3. 2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를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농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이라 한다)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제3조 앞의 “제2장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를 삭제하고 제3조 조 제목 “(설치)”를 “(귀농정책위원회 설치)”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귀농 지원”을 삭제하고 제16조 앞의 “제4장 보칙”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명칭변경, 작성대상 변경(1천㎡ 이상→모든 농지)에 따라 귀농인 정의 구체화 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2장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	<삭 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이라 한다)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귀농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

하여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제3장 귀농 지원</u> <u>제4장 보칙</u> <u>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지방자치법」 제29조 재기재로 삭제(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
--	--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나. 관련 조문: 정의(안 제2조), 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안 제1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00,000	330,000	346,500	364,000	382,000	1,722,500

※지원대상 확대 2년차 10퍼센트 증가, 이후 매년 5퍼센트 증가 예상

3. 관련 의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군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확대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가. 대상: 세대주가 20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세대 60세대

나. 사업비: 300,000천원 = 5,000천원 × 60세대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5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농지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 개정 주요내용

가.~ 바. (생략)

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포함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9조).

농지법 [법률 제18021호, 2021. 4. 13., 일부개정]	농지법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344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

의 안 번 호	제30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22. (제4회)

심
의
의
결
사
항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연월일	2023. 3. 21.

규제혁신담당 심사필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3-30
----------	---------

제출일자	2023. 3. 21.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외식업소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외식업소 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원사업, 지원대상,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라.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선정을 정함(안 제8조)
- 마.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기능·구성 등을 정함(안 제9조~제16조)
- 바. 명칭사용의 금지, 사후관리 등을 정함(안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51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3. 2.~3.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대표음식”이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
3.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소로서 군에서 선정한 외식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식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외식업소 지원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
2. 대표음식·대표음식점의 관광 상품화 등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교육, 현장 자문
 - 나. 안내책자 발간 등 홍보, 위생물품 지원

- 다. 방역, 해충방제 등 위생관리
- 2. 음식점 내외 환경 및 시설의 개선
- 3.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대표음식의 개발, 보급 및 육성
 - 나. 대표음식점 표지판 설치
 - 다. 광고, 안내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홍보
 - 라. 관광 상품화를 위한 관련 축제 개최
- 4. 우수 외식문화 탐방·체험, 음식거리 조성
- 5. 그 밖에 외식업소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 1. 대표음식점
- 2.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외식업소
- 3.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외식업소
-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식업소 또는 관련 단체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대표음식 등 선정)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표음식, 대표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대표음식은 군수가 발굴할 수 있다.
 ③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외식업소 육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표음식·대표음식점 선정 및 선정취소
2. 대표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
3. 대표음식의 관광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4. 외식업소 육성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촌과장, 민원소통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기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외식·관광 또는 식품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외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식업소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명칭사용의 금지) 대표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대표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대표음식점에 대표음식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표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외식업소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지원사업(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151,000	151,000	151,000	151,000	151,000	755,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음식거리 조성 사업: 96백만원

가. 위생 등 교육 10, 시설개선 56, 홍보마케팅 30

2. 음식관련 축제 개최: 55백만원

가. 거창데이 행사 30, 사무관리비 등 25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식품위생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타법개정]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

고 외식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식업체의 환경 및 서비스 등의 개선활동을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바. 한자를 같이 쓰기 P28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동음이의어, 한글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P34

- **개 의(開議)하다**: ‘개 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 **호 선(互選)하다**: ‘호 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쓴다.

예)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국어기본법」 제6조의2제4항)